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최상진 · 김기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재판에서 범죄의 유, 무죄 결정과 그 과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체계는 범죄의 현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범죄의 구성과 규정에 관여되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판관 및 변호사, 검사의 재판활동은 유, 무죄 추정과 판결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사고 방식과 판단 양식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법체계는 사법인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들의 관심과 자각된 필요에 따라 심리학적 전문서적을 선택적으로 접하거나 자신의 재판사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나름대로의 ‘자가류 심리학’을 터득하고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양형에 일관성이 없게 되고 생태적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재판관들은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강력범죄나 성화통과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활동에서 언론 등의 대중매체와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 조교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언론은 흥미위주의 보도 성향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재판이 있기도 전에 사전 재판하여 유죄로 몰아가는 경향이 짙고,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미국의 법제도는 이러한 언론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사법계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그 필요성 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범죄는 사람이 저지른(作爲한) 잘못된 일(가해 및 피해)과 관련해 성립한다. 범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일을 저지르는 주체가 사람이어야 하며, 그 일과 그 일의 결과가 법에서 규정한 범죄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재판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 즉 잘못된 일의 작위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잘못된 일 및 그 일에 관계된 행위가 법의 범죄 구성 조건에 합당한가를 판단하는 절차와 활동이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활동은 피의자 및 피의자의 행위가 잘못된 일의 작위주체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일과, 잘못된 일과 관계된 행위가 과연 법에 규정된 범죄 기준에 합당한 행위로 규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판단에는 문제된 피고의 행위가 발현하게 된 원인과, 그러한 행위가 법조문의 범죄기준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관여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반드시 관여된다. 여기서 판사의 역할은 법전(法典)이라는 범죄판단 틀거리 속에서 행위에 대한 해석 판단에 기초하여 피고 행위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행위에 대한 해석판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위의 이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반드시 관여되기 마련이다.

재판 활동 및 과정에 이와 같이 심리학적 지식과 심리학적 판단이 중요하게 개입되는 한 재판의 기본 정신인 객관적 증거에 의한 실증의 정신은 결코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심리학적 지식이나 이론은 통계적 검증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법정에서와 같은 개별사례의 행위 해석이나 작위 원인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때 오류의 가능성은 높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인과성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어떠한 이론에 의존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지식이나 이론이 법정에서의 재판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밖에도 많다. 예컨대, 대부분의 심리학적 이론과 지식은 보통의, 일반인의 일상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 이어서 범죄자의 행위와 같은 규범일탈적, 비일반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서 추출된 이론이나 지식이 실제의 범죄상황에서 일어난 구체적 범죄행위의 설명에 그대로 적용할 때 생태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과 곤란점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를 비롯한 검사 및 변호사는 심리적 해석과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법정 현실이다. 재판에 관여하는 사법인들의 심리적 해석과 판단이 얼마나 타당한가의 문제는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교육(法教育)에서 심리학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과 재판과정에 전문가로서 심리학자가 참여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판활동에서 암묵적 전제로 또는 명제적 언술 형태로 나타나는 심리적 해

석과 판단의 근거는 이론적 측면이나 타당성의 준거에서 높은 강장성(強壯性)을 담보하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법조인에 대한 교육·연수과정에서 심리학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사법인들이 범죄사건과 관련된 인간의 행위를 해석하는데 사용하는 심리적 이론과 지식은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습득된 것일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단언적인 판단은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해 본다는 차원에서 구성적으로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교육 과정 및 사법 연수 과정에서 심리학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사법인들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들의 관심과 자작된 필요에 따라 심리학적 전문서적을 선택적으로 접하거나, 자신의 재판사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나름대로의 ‘자가류(自家類) 심리학’을 터득·구성하여 이를 실무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실일 것이다(최상진, 김기범, 1999). 이러한 자가류 심리학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보류할 수밖에 없으나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자가류 심리학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판사의 자가류 심리학이 판사에 따라 다를 때 동일한 사건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판결과 형량 결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¹⁾

심리학적 전문 지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자가류 심리학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판결하는 판사의 자기 확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극단적

1) 「뇌물-위증-폭력시위-강력범죄, 선고형량 대폭 강화」(1998년 2월 14일자, 조선일보): 대법원은 「선고형량의 적정화를 위해 범죄별로 양형(量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판사회의 활성화해 들쭉날쭉한 재판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선고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것은 재판에 적용되는 자가류 심리학이 판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인 형태로 분류해 보면, 한쪽 극에는 자신의 판결에 확신을 갖는 경우이며, 그 반대쪽에는 자신의 판결에 확신을 못 갖는 경우일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재판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부적(負的)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전자의 경우 체계적 오류(systematic error)를, 후자의 경우 무선적 오류(random error)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자의 경우 자가류 이론에 대한 과잉확신과 과잉고착으로 인해 자신의 이론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결과를, 후자의 경우 주변적 정보나 사건 성질의 우발성·특수성에 부당하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고의 주제인 「재판에 있어서의 여론과 언론 보도의 영향」은 전자 보다 후자의 경우에 더욱 밀접히 관련된다고 하겠다.

범죄의 사회적 구성성

범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일까, 아니면 사회-문화적으로 사람들이 구성한 가공 현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본 고는 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수용한다. 범죄 상황에는 분명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 인간이고, 가해의 행동과 피해의 결과는 현실로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동일한 행위에 의해 유발된 사건도 문화와 지역 또는 시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타날 수 있으며²⁾, 피고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 직업에 따라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따라 동일한 피의 행

위에 대한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³⁾ 동일한 성격의 범죄 행위도 그 행위와 연관해서 나타난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형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범죄의 문화적-사회적 구성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윤관 대법원장은 강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밝히는 자리에서 “선고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1998년 2월 14일자, 조선일보). 여기서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해야 한다는 말은 곧 재판이 문화-사회적 가치와 시대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이 사회-문화적 상황 및 시대정신과 유리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강력 범죄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언론보도나 기사를 보면 ‘반인륜적, 반사회적 강력 범죄’, ‘상식을 벗어난 범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흉악범’, ‘어쩌면 그럴 수가’, ‘충격적 사건’, ‘사람이 못 할 일’, ‘악질범죄’, ‘파렴치한’ 등과 같은 기사 머리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말들은 그 자체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피의자의 행위를 범죄로 이미 규정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건이 된 행위의 원인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행위 당사자의 심리적 특성으로 귀속시키는 ‘사회-문화적 사고(思考)양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범죄의 사회-문화적 구성성은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 속에 이미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는 특정한 사물이나 사건을 지시적(指示的)으로 지칭하거나 사건에 대해 객관적,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차원을 넘어 그 사물이나 사건을 일정한 시각에서 평가하는 기능까지도 수반한다. 성폭

2)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5공화국 당시에는 그 행위를 반란 또는 폭동행위로 규정하였으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행위 당사자들을 민주화 공로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성희롱 문제가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전에는 법률적 책임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우조교 재판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행위가 법률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게 되었다.

3) 정치인을 피의자로 한 재판과 관련하여 ‘표적사정’, ‘마녀사냥’, ‘피烝죄’, ‘정치적 재판’과 같은 말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대상이 문제된 행위 그 자체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 정치적 맥락이 재판에 관여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또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풍자적인 말이 일반인의 대화에 자주 등장한 적이 있음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재판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함축한다.

행이란 말속에는 ‘폭행’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부정적 성격을 이미 그 말속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행이란 말은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중립적 기술의 차원을 넘어 ‘성적 자유를 박탈한다’, ‘인권을 침해한다’, ‘성적인 범죄행위를 한다’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평가 차원의 의미가 그 말속에 내장(內臟)되어 있다. 과거에는 없었으나 최근에 새롭게 구성된 ‘성희롱’이란 말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로 그 말속에는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힌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남성들이 하기 쉬운 나쁜 짓이다’라는 함축이 들어가 있다. 즉 단순한 행위서술을 넘어 괴롭히는 짓, 나쁜 짓이라는 평가적 해석이 내포된다. 서구에서 성희롱이란 말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가해성 성행위 뿐만 아니라 여성 이 남성에 대해 행하는 가해성 성행위를 동시에 포함하는 양방향성 성행위 개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성희롱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방향적 가해성 성행위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동일한 개념이 문화-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언어는 객관적 사실과는 분리되어 그 자체로 의미를 창출하고 동시에 그 의미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역사-문화-사회적 구성성을 갖는다(Vygotsky, 1978). 재판이 언어로 이루어지고, 언어가 문화-역사적 인공물이며, 문화-역사적 인공물이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의해 구성되며,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문화-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상호역환적 관계구조를 갖는다면 결국 재판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에 불가피하게 종속된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우 조교 사건 재판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성희롱이라는 범죄용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란 말로 그 행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해당되는 판례를 찾지 못해 재판에 어려움이 많았고

사회에서도 이것이 범죄가 되느냐의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의 여론이 들끓었다. 1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예기치 못한 판결’이란 머리말 기사가 언론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놀라움의 반응이 나타난 것은 제자가 스승을 고발하는 데서부터, 과거에는 목과되었던 남녀간의 신체접촉이 성적인 범죄로 규정되는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회-문화-역사적 통념과 상반되는 것들이 법적인 기정사실로 새롭게 구성되고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성희롱 재판과 관련하여 이처럼 찬반 양론적 사회담론이 활성화되고, 1심에서의 배상 판결에 대해 사회구성원 특히 기성세대에서 놀라움의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재판이 사회-문화적 상식과 상반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우 조교 사건에 대한 판결은 성희롱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통념에 대한 paradigm shift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제는 성희롱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개념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재판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관련행위에 대한 심리적 해석과정에서 사용되는 심리학적 제반 논술 자체가 그 사회의 문화-역사현실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 행위의 유죄 여부 판결에서 반드시 개입되는 판단의 하나는 그 작위된 행위가 피고의 의도성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외부적 조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나타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와 같은 피고 행위의 의도성 유무 판단은 이 문제에 대한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나 원고 측의 직접적 진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양방은 모두 자기 측의 유리한 진술을 만들도록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사는 자신의 자가류 심리학 이론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의도성 유무의 추론 판단에 필요한 직, 간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도성 유무를 결정한다. 이러한 의도성 추론 판단에

는 반드시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 안되며, 마음과 정신에 대한 증거성 정보 및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의도성 유무를 추정한다.

예컨대, 살인을 결과한 행위가 피고의 의도에 따라 작위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 조건이나 압력에 의해 유발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살인할 당시의 마음과 정신상태를 추론해야 한다. 먼저 살인할 의도성과 관계된 마음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피살자에 대한 살인시도를 피살되기 전의 과거에도 행한 적이 있는가, 피살자에 대한 원한 감정이 있는가, 살인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는가, 자신의 실해 행위가 성공적으로 살해를 결과할 것으로 확신했는가 등에 대한 하위(下位) 추론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위 추론 판단 각각도 또 다른 차하위(次下位)의 즉 하하위(下下位) 추론판단에 기초해야 할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하위 추론 수준인 ‘피살자에 대한 원한 감정’ 유무의 판단은 원한을 살만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후의 양자간 접촉관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양자간에 있었던 사건이 과연 원한을 불러일으켰는가, 그 이후에 일어난 접촉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역시 해석과 추론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마음에 대한 추론의 과정에는 하위추론, 하하위 추론 등 몇 단계의 추론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의 행위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형량 선고에 이르기까지 재판의 전과정에는 심리적 추론이 불가피하게 개입되며, 이러한 심리적 추론에는 사회-문화적 통념, 가치관, 사회정서체계 등이 구조적으로 관여된다는 점에서 범죄와 재판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규정 및 구성성을 갖는 사회적 현상이다.

재판에서 의도성 및 마음의 문제와 관련된 추론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의 정신상태 문제가 중요한 심리(審理) 대상으로 등장한다. 예컨대, 피고의 행

위작위가 판단능력이 훼손된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정상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는가의 문제는 피고의 행위 작위 의도성과 행위에 관여된 마음을 추론하는 데 결정적인 판단 준거가 된다. 즉 피고의 의도성 및 마음을 추론하는 판사의 이론도식(schema)에 피고의 정신상태 판단은 중요한 변수로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에 관여된 쌍방은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한 정신상태를 거증(據證)하는 방향으로의 단서와 정보들을 찾아내고 활용하여 자기 쪽에 유리한 정신상태 판단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상반된 정신상태 구성상황에서 판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력(知力)을 동원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합당하다거나 또는 제3의 도식을 적용한 제3의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 판사의 자가류 심리학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이러한 추론 판단도 또한 사회적 규정 및 구성성을 갖는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내재한다.

이와 같이 사법적 추론 판단에 관여하는 자가류 심리학에는 그 사회나 문화권에서 자생된 사회통념성 마음 이론(socio-cultural theory of mind)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며, 재판에 계류된 사건과 관련된 구성적 사회 담론(constructive social discourse)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상황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조정되기도 한다. 사법인들이 사용하는 자가류 심리학이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는 한 ‘자가류’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자가류 심리학과 학문으로서의 심리학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데 있다.

Kahneman, Slovic, Tversky(1982)의 연구에서 보면 일반인이 공유한 자가류 심리학의 한 형태인 일반인의 귀인도식(歸因圖式)이 합리성 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물며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자가류 심리학이 사람에 따라 또는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 자가류 심리학의 문제

는 타당성의 문제이기 전에 신뢰성의 차원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물론 자가류 심리학은 그 대상과 내용에 따라 사회-문화적 통념을 많이 반영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특수한(idiosyncratic) 사유방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폭은 넓고 다양하다. 전자의 경우를 ‘문화-사회적 자가류 심리학’이라 한다면, 후자의 경우를 ‘개인적 자가류 심리학’이라고 명명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성이 높은 반면, 후자의 경우 공유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본 고의 주제인 「범죄의 사회적 구성」 측면에서 보면 후자인 개인적 자가류 심리학보다 전자인 문화-사회적 자가류 심리학이 본 고의 주제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문화적 자가류 심리학의 일반적 특성은 점장이의 말처럼 해석의 융통성이 크며, 구체적이라기 보다는 추상적이며 범주적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적용 가변성이 매우 크다. 바로 이러한 해석의 융통성과 적용에서의 가변성 때문에 자가류 심리학은 과학적 검증에서 요구하는 ‘사실 아님의 확인검증’의 굴레를 구조적으로 배제시키거나 피해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가류 심리학은 소수의 학자가 실험실에서 개발한 이론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생활의 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이론이므로 그 사회생태적 기반이 매우 공고하다. 어떠한 이론이건 공고한 사회생태적 기반위에 세워진 이론은 실용적 타당성과 예언자성성(豫言自成性; self-fulfilling prophecy)이 높다는 점에서, 자가류 심리학은 구조적으로 자생성(自生性)이 매우 크며 상반되는 반증적(反證的) 현실사상(現實事象)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다.

자가류 심리학의 또 다른 특징은 정신-심리주의적(mentalistic)이며 의지-동기 지향적(intentional) 언어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가류 심리학의

설명양식은 성격, 태도, 동기, 무의식, 귀인, 감정, 지각 및 인식 등과 같은 심리적 특질(disposition)이나 상태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자가류 심리학의 설명양식은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격 구성에도 그대로 원용되고 있다. 범죄라는 개념도 마음의 가정없이는 구성될 수 없으며, 범죄의 성격을 나타내는 범죄유형들, 예컨대 반인륜-반사회적 범죄행위, 성희롱 및 성폭행, 강력범죄 등과 같은 범죄유형의 규정은 그러한 범죄행위의 배면(背面)이나 기저(基底)에 깔린 정신-심리적 및 의지-동기적 언어나 개념의 도입없이 불가능하다. 서울대 우조 교 성희롱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성희롱을 ‘…… 노골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성적인 의도 여부 즉 의지-동기가 성적 회통의 정의에 핵심적 개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지 및 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그 내용 자체로 사회-문화적 특징 및 구성성을 반영하며, 동시에 의지 및 동기에 대한 추론도식도 사회-문화적 과정 속에서 주조된다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와 여론성 담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없다. 따라서 모든 사건은 그 구성과 재판 과정에서 항상 고유질(固有質)의 특성을 갖는다. 특히 현안의 사건이 기대하지 못했거나, 특이한 성격의 고유질이 높거나 또는 그 사건이 그 사회-문화권의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나 시사점을 갖는 경우에 언론과 사회구성원은 이 사건에 대한 높은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성격규정과 판사와 같은 사건 처리 당사자적 입장에서의 사건 구성과 사건 재판을 개인 내적 심리 과정이나 사회담론적 상황 속에서 수행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언론보도는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사건관련성 사고와 사건 대상

적 사회답론을 축발하고 유도하며 정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인들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적으로 동시에 일방적으로 언론보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언론보도의 보도구성 양식과 사건판단 방식이 그대로 일반인이 사건을 조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s & Dee, 1991). 언론의 사건 보도 양식의 특성을 보면, 1) 사건을 결과한 행위와 그 행위가 결과한 피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건이 일어난 상황이나 과정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게 다루는 경향을 보이며, 2) 사건에 대한 시각면에서 보면 주로 검찰측 입장의 범죄 구성적 방향에서 기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묵시적으로 유죄임을 함축한다(Hans & Dee, 1991). 언론보도의 사건 판단 양식은 1) 문제된 사건과 관련된 행위가 사회구조적 요인이나 상황적 맥락 요인보다는 행위자의 개인 내적 특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함축이나 설명양식을 따르며, 2) 사건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적(descriptive) 설명보다는 사건의 잘잘못과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규범적(normative) 설명 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

이와 같은 언론보도의 사건 보도 양식과 사건 판단 양식은 사람과 사건의 중대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데는 적합한 화술(narrative) 양식일 수 있으나, 사건에 관여된 행위와 관련된 인과분석과, 행위와 법조문의 범죄 규정간의 상응성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유죄적부를 밝히는 재판의 양식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김○○ 교수가 금용학원 이사장인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인사건 보도에서, “어떻게 설명하나, 해도 너무했다. 배금이 인륜죽여, 도덕회복 시급 (1995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이라는 머리기사로 시작하여, “사태가 너무 충격적 … 사회전체에 던져주는 충격과 과장……” 등과 같이 사람과 사건

을 중심으로 한 기사 구성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시공과 관리소홀에서 비롯된 삼풍백화점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과정과 원인을 밝히는 방향의 조사성(investigation) 기사내용보다는 사건의 심각성과 도덕적 책임문제와 관련된 기사가 주종을 이루는 경향을 나타내 보였다. 이러한 기사 구성 양식은 일반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데는 적합하나 법정에서와 같은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는 거리가 먼 기사구성양식이다.

재판은 법을 저울로 하여 사건 행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는 활동과 과정으로 규정되나 동시에 법을 비롯한 재판의 활동과 과정에는 도덕적, 사회적 판단기준이 음양으로 개입된다. 언론에서의 사람과 사건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한 보도도 일반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도덕적, 사회적 차원의 정서와 평가판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재판과 언론보도간에는 도덕과 사회정서와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언론보도는 구조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소지를 갖게 된다. 박나리양 유괴사건과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유괴는 우리 사회 정서상 가장 반인륜적인 강력범죄로 인식돼 있어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제 구형량이나 선고형량에서도 중형이 내려지는게 일반적이다(1997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어 언론의 사건 재판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보도는 잠재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언론은 일반인의 범죄구성에는 물론 재판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참조집단 이론(reference group theory)에 따라 그 과정을 분류해 보면 크게 1) 정보적 과정과, 2) 압력행사과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보적 과정은 일반인에게 있어 사건에 대한 정보성 보도

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에게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 과정이며, 압력행사과정은 언론이 갖는 전문적 권위에 의해 언론의 보도를 사실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믿어 일반인과 사법인이 부지불식간에 보도의 내용과 범죄구성 방향을 수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압력행사과정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전문가의 견해나 일반 국민의 여론 형태로 사건을 보도할 때 압력행사의 효과는 배가된다.

그 일례로 서울대 우 조교 성희룡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과 언론보도과정을 분석해 보면,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 YWCA, 경실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등 막강한 힘을 가진 시민단체가 공동연합전선을 구성하여 변호, 시위, 공청회, 성명서 발표, 법정참관 등 전(全)방향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 바 우 조교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민사사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재판,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 보였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판사이더라도 이러한 압력집단의 요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보도의 방향과 변화추이는 부록 1 참조)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재판전(前) 및 재판과정에서 사건 및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박광배, 1995). 따라서 미국에서는 재판에 계류되었거나 계류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가능한 한 억제·방지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의 헌법에 명시된 의사표현의 자유는 재판에 관계된 보도의 억제와 상반되는 법률로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갈등적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과연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실제의 재판 장면이나 사건과 관계해서

직접 수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가상적 상황에서 비현실적 범죄현실을 보도하는 실험조건 하에서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재판 전 언론보도에 노출될 수록 재판 전에 문제된 당사자가 유죄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Ogloff & Vidmar, 1994; Otto, Penrod, & Dexter, 1994)과, 재판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하여 기사의 ‘어떤 부분’을 읽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무엇을 토론했는가’가 피험자들의 재판에 대한 의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연구들은 생태적 타당성의 문제 즉 모의재판 상황과 실제의 재판상황과의 차이에서 오는 모의재판의 현실성(realism) 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미국의 법원에서는 언론보도를 제지하는 방향보다는 언론보도의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장치화하고 있다. 예컨대, 1) 언론보도에 접했다는 가정이 성립하거나 증거가 있을 때 재판을 연기하는 방책(continuance), 2) 배심원들에게 다각적 질문을 통해 언론보도에의 접촉여부를 추정하고 배심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주지시키는 방식(expanded voir dire), 3) 배심원을 언론보도에 노출되지 않은 타지역에서 선정하여 활용하는 방식(imported jurors), 4)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 지역에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아예 재판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재판을 여는 방법(change of venue) 등을 사용한다(박광배, 1995; Bartol & Bartol, 1994; Wrightsman, Nietzel, & Fortune, 1994).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도(adversarial) 하에서 언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과 같은 판사제도(inquisitorial) 하에서 언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박광배, 1995). 우선 배심원제도하에서는 사법업무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이 유죄여부 판결(verdict)을 수행하며, 판사제도하에서는 보통사람이 아닌 판사라는 법률 및 재판 전문가가 유죄여부 판결을 수행한다. 배심원제도의 배경에는 재판이 보통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통사람의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더욱 타당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반면 판사제도의 배경에는 포청천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보통사람 보다 더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 제도 중 어느 것이 더욱 타당한가의 문제는 본 고의 관심이 아니다. 여기서는 언론보도의 영향과 관련하여 보통사람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전문가가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가 관심사가 된다.

상식적인 한 가지 추론은 보통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주변사람들의 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상식적인 또 하나의 추론은 보통사람의 판단쉐마는 전문가 보다 단순하므로 불충분한 사건 관련 정보를 가지고 도 쉽게 유죄여부를 결정하는 성향이 높으며 또한 자신의 판단에 더 높은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실증적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우나 본 고에서는 전자의 가정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여기서는 언론보도의 영향을 참조집단의 영향으로 개념화하여, 그 영향의 과정을 정보적 과정과 압력행사적 과정으로 구분하여 논해보기로 한다.

배심원과 같은 일반인은 재판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보의 선택능력이 부족하며, 주어진 정보에 대한 실감적 확신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있는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언론의 정보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배심원과 같은 일반인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언론의 권위에 승복하거나 암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언론의 압력행사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 나라와 같은 판사제도하에서의 언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보면 그 영향의 정도는 배심원제도하에서 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이 미흡한 우리의 현실에서 재판이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성을 띤 사회여론의 영향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재판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사회의 여론이나 정치적 맥락에서 재판이 좌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고려해 보면 우리 나라의 재판이 여론이나 언론보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특히 반인륜범죄나 성관련 범죄와 관련된 재판에서는 사회적 여론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언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배심원이나 판사의 판단에 개입되는 준거변수와 준거변수의 영향을 영향력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모의 재판 실험에 배심원 배역으로 참가한 대학생들이 재판 전에 주어진 정보가 어떻게 재판 전 유죄 여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모의 재판이 이루어진 후에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Otto, Penrod, Dexter(1994)의 실험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 실험은 어떤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피험자들에게 접하게 하여 모의 재판이 있기 전에 범죄자의 유, 무죄에 대해 판단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험자들에게 재판 과정을 비디오로 보게 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으로, 각 변인들(예를 들면, 성격, 전과, 증거의 신빙성 등)이 재판 전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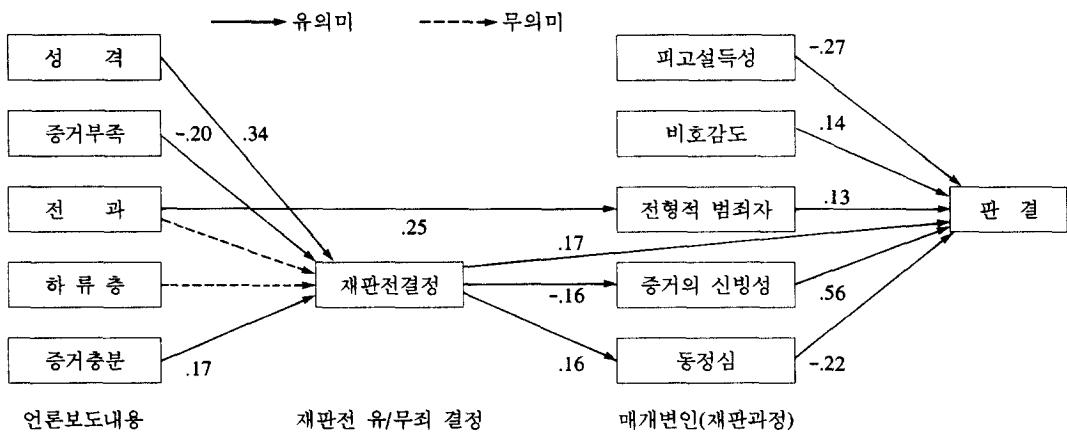


그림 1. 재판 전 언론보도, 재판 전 유,무죄 결정, 매개 변인, 판결간의 관계 경로 분석 모델

정과 최종 판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가를 측정한 실험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재판 전 유죄 판단에 범죄자의 성격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한 바대로 증거부족은 유죄판결에 부적(負的)으로 영향을 미치나 그 영향의 정도는 성격요인보다 낮다. 다시 재판이 이루어진 후에 내리는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하는 데는 신빙성이 있는 증거가 가장 큰 정적(正的) 영향을 미치며, 피고의 설득성 있는 변론과 피고에 대한 동정심은 유죄 판결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것은 피고에 대한 비호감도가 클수록 유죄판결의 가능성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를 언론과 결부시켜 보면, 언론보도에서 피고의 성격을 포함한 인물평가, 피고에 대한 증오심이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서성 상황정보, 전과의 유무 등이 기사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기사 내용이 재판 전 유, 무죄 판단과 재판 후 유,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곧 언론이 재판에 대한 영향과 그 원천적 과정에 대한 추론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배심원 제도의 모형에 따라 이루어진 모의재판 연구라는 점에서 판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재판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맺는 말

범죄의 유, 무죄 추정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최종 판결은 문화-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 재판관 및 변호사, 검사의 재판활동은 유, 무죄 추정과 판결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사고 방식과 판단 양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법 체계는 범죄의 현실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범죄의 구성과 규정에 관여되는 사회-문화적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사법인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와 자각된 필요에 따라 심리학적 전문서적을 선택적으로 접하거나 자신의 재판사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나름대로의 ‘자가류 심리학’을 터득하고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의 양형에 일관성이 없게 되고 생태적 타당성의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Harre(1994; 1986)는 「담론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심리가 사회적 담론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Vygotsky (1978)라는 구 소련의 심리학자는 ‘말이 생각을 만든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마음이 사회적 산물이며 언어적 대화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언론은 바로 언어를 사용한 사회

적 담론을 보편적 재생산(representative reproduction)이라는 외형적 형태를 띤 가상적 사회현실(virtual social reality) 구성 및 재구성하는 도구(tools)이며 기구(organization)이다. 사람들은 언론의 가상현실을 실물현실로 착각하고 수용하는 성향이 강하다.

재판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에서 일반적 관심지향은 법정의(法正義)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독자욕구(讀者慾求) 충족적이며, 객관적 기술(客觀的記述) 지향적이라기 보다는 규범적 설명(規範的說明) 중심적이다. 또한 인과적 관계(因果的關係) 추구적이라기 보다는 논리적 관계(論理的關係) 구성지향적이다. 이러한 언론의 관심지향은 사법업무의 업무윤리 지향과 상치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사법 윤리는 법정의(法正義), 객관적 기술, 인과적 설명을 기축(基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언론의 보도관심과 법조인들의 사법윤리 간에는 불일치성이 높으며 따라서 법조인들은 언론의 보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두 방향의 지향성은 각기 자신들의 틀 속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는 강력범죄나 성희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재판관들의 재판활동은 언론 등의 대중매체와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언론은 흥미위주의 보도 성향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재판이 있기도 전에 사전 재판하여 유죄로 몰아가는 경향이 짙고,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양형에 있어서의 일관성 부족과 판례가 없는 재판일 경우에는 더욱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제도는 이러한 언론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사법계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고 그 필요성 조차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만일 재판 전 언론보도에 대한 방지책을 우리 나라 법체계에 도입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사법업무가 언론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할 때 언론의 보도 양식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사법업무가 스스로 언론의 부당한 영향을 방지하고 방어하는 내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방법은 사법업무의 철학적 근거에서부터 재판의 절차적 정의, 재판 활동의 투명화와 탈권위주의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재판의 기본정신인 형평성 유지 등 재판업무 자체의 내적 정의 실현이 구현되고, 표명되고, 홍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법업무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나 거리감의 해소는 바로 이러한 사법업무 내부에서의 정의실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 사람들은 사법업무를 믿고 사법인을 보통사람이면서 동시에 사회정의의 수호자이며 전문가라는 사법인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생기며,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사법인의 권위(권위주의가 아님)와 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광배 (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조선일보 (1995. 3. 21). 돈 때문에 교수가 그런 짓을, 아버지 살해 전문가 - 일반시민 경악.
- 조선일보 (1997. 9. 12). 박나리양 유괴범에 극형 불가피.
- 조선일보 (1998. 2. 14). 뇌물-위증-폭력시위-강력 범죄, 선고형량 대폭 강화.
- 최상진 · 김기범 (1999). 범죄의 사회적 구성: 여론과 언론보도의 영향. 한국법심리학회 제1차 공개포럼, 1-15.
- Bartol, C. R., & Bartol, A. M. (1994). *Psychology and law*.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ans, V. P., & Dee, J. L. (1991). Media coverage of law.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5(2),

- 136-149.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Thousand Oaks, CA: Sage.
- Kahneman, D., Slovic, P., & Tversky, A. (1982).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tto, A. L., Penrod, S. D., & Dexter, H. R. (1994). The biasing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on juror judgements. *Law and Human Behavior*, 18(4), 453-469.
- Ogloff, R. P., & Vidmar, N. (1994). The impact of pretrial publicity: A study of compare the relative effects of television and print media in a child sex abuse case. *Law and Human Behavior*, 18(5), 507-525.
- Wrightsman, L. S., Nietzel, M. T., Fortune, W. H. (1994). *Psychology and the legal system*. Pacific Grove, CA: Brooks / Cole Publishing Company.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부록 1〉

우조교사건관련 신문기사 내용

1) 1993년 10월 소송(1994. 4. 18)

- 첫 공판(1994년 11월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시작, 각종 유형 열거 유인물 배포
- 국내 처음,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을 문제삼아 제기된 소송
- 이후 4차례 공판
 - 성희롱이다-무의적으로 이뤄졌을 뿐 성희롱의 의도는 없었다
 - 재판부의 고민-서구의 판례(상대방의 의상에 반해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성적 범죄로 인정)와 우리의 관습과 인식사이의 어딘가에 낙점을 해야한다
- 성희롱 배상판결: 남성 충격, 여성 환영(1994. 4. 18)
 - 남성위주의 성문화에 대한 경종, 지난 4월 1일 발효된 성폭력 특별법에도 처벌규정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
→ 성희롱의 개념 규정(재판부): 직장의 상급자가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여성직원에게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접근에 응하도록 요구하거나 불쾌한 성적 언동을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실인정의 어려움,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느냐의 문제
 -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1. 신체적 접촉 행위, 2. 무형적 폭력, 3. 원고 거절후의 피고의 보복적 태도, 4. 실질적인 해임
- 성희롱 처벌 찬성, 74.5%, 남 66.3%, 여 82.5%(한국갤럽, 조선일보 여론조사)(1994. 4. 23)
반대(남 20.7%, 여 6%), 여성도 책임(86.2%), 현재 우리 나라이 성희롱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 페미니즘 승리, 역사적 사건, 메가톤급 핵탄에 비견될만한 충격과 화제, 판결의 사회적, 역사적 의의(1994. 4. 24)

2) 성희롱 소송 2라운드, 항소

- 직장내 성폭력 예방-대책 가이드 라인제시(공청회)(1994. 6. 28)
- 항소심 1차 공판, 서울 고법 민사 9부(1994. 7. 13)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 성희롱 문화를 걱정하는 모임 발족, 여성단체, 교수 등(1994. 10. 6)
- 참는 한도 넘으면 성희롱, 사회-심리학 전공 여교수 10명 의견서(1995. 4. 18)
- 성희롱 항고심, 7월 25일 선고공판, 재판장 “할말 다하라”
- 95년 7월 25일 서울 고법 민사 9부, 우조교 패소판결(1995. 7. 26)

여성계 반발

3) 대법원 최종 판결문(1998. 2. 1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

- 변호인단에 올해의 여성상 시상(한국여성단체 연합회)(1998. 3. 3)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 내고, 성희롱을 여론화시키는 데 공로가 인정되어

Socio-Cultural Construction of the Crime: The Influence of the Public Opinion and the Publicity

Sang-Chin Choi and Kibum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resent paper was to recast the legal processes and decisions of crim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cultural constructionism. The modus operandi of Korean juristic system has depended heavily on criminal realism, neglecting the social-cultural processes and dimensions involved in the definition and construal of criminality in the context of juristic verdict. Juristic activities of legal professionals working in court were conceived to be taken place in close knit with socio-cultural modes of thinking and judging. The 'working naive psychology', which is form of social-cultural psychology, of legal professionals were critically addressed in terms of its inter-reliability among professionals and ecological validity. Additionally, reports of mass media on crime cases socially issued, i.e., homicide, sexual harassment, kid-napping etc., were analysed to reveal that they are oriented toward consumerism instead of legal justice, that they tend to make a pre-decision before trial, and to induce public opinion to a particular direction before or in the middle of trial, ultimately exercising normative influence upon trial process and outcomes. Finally, an analysis of newspaper reports on the civil case of sexual harassment on Assistant Woo was made to support two major presumptions that; the newspaper reports are socio-culturally constructed and they are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upon trial.